

울산지방법원 2023. 3. 31 선고 2021가단10965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법조

담당변호사 천성연, 최상무, 정은경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

담당변호사 심규명, 윤희상, 이진혁

변 론 종 결 2023. 3. 10.

판 결 선 고 2023. 3. 3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1. 피고와 C가 2020. 12. 28. 양산시 D 답 115㎡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양산시 D 답 115㎡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0. 12. 29.

접수 제743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양산시 E에 있는 사찰인 F사의 주지이다. 피고의 딸인 C는 2009년경부터 2018. 5.경까지 위 사찰에서 총무로 일하였다.

나. 원고와 C는 2009년경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2011. 11. 18.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9. 8. 27. 협의이혼하였다.

다. 원고는 C에게 2018. 7. 30. 증여를 원인으로 양산시 D 답 115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.

라.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0. 12. 28. 증여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0. 12. 29. 접수 제743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마. 1) 한편, 원고는 C를 피고로 삼아 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1110호로, C가 위 사찰에서 횡령 및 배임 등을 저질러 원고에게 약 2,100,000,0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며 일부청구로서 350,245,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.

2) 제1심 법원은 2022. 10. 26. 원고와 C는 혼인기간 중 협력하여 F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신도들의 시주금 등에 관하여 원고가 C에게 포괄적 사용 및 운용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이고 일부 금원이 사찰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C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 내지 4, 제3호증, 을 제13, 1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요지

C는 2009년경부터 2018. 5.경까지 F사 총무로 있으면서 원고의 F사운영비에금통장(웅상농협

(계좌번호 1 생략))과 인감도장을 직접 보관하여 재산을 관리하면서 합계 350,245,59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고, C는 횡령사실이 발각되자 그 어머니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.

3. 피보전채권의 존부

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원고와 C의 관계, 원고 주장 채권의 금액 및 발생기간, 이 사건 소 제기 시점과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횡령 등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황운서